



: 2021-04-0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70806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

담당변호사 김종휘

피 고 1. A

2. B

3. C

피고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철웅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해당란 각 원고에게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21-04-01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송달일¹⁾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작품명' 기재 온라인 웹툰의 작가들로서 각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이다.

1) 2019.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신청서 부분 송달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 대리인은 종전 청구취지에 관하여 제1, 2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신청서 부분 송달일"은 "신청서 부분 최종송달일"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2021-04-01

성명	작품명	경사변화밀도표연번	비고
		406	공동저작
		1) 777	
		2) 466	
		306	공동저작
		643	
		1) 643	1) 공동저작
		2) 642	2) 공동저작
		893	
		1423	공동저작
		1574	
		75	공동저작
		76	공동저작
		477	
		360	
		78	
		435	
		788	공동저작
		79	공동저작
		329	공동저작
		277	공동저작
		365	공동저작
		536	
		307	
		126	공동저작
		6	
		1589	
		267	
		354	
		63100	공동저작
		1049	
		131	공동저작
		360	
		303	
		160	
		1326	
		1677	
		65	
		798	공동저작
		344	
		417	
		564	
	없음		갑 51호증 공동저작
		1) 1521	
		2) 1389	
		1349	공동저작
		326	
		1666	
		324	
		791	공동저작
		663	
		396	공동저작
		70	공동저작
		322	공동저작



: 2021-04-01

나. 피고 A은 2016. 10.경부터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이하 '파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사용하여 위 'D'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upload)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위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2018. 5. 15.경까지 위 'D'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 웹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웹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2. 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18. 8. 17.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²⁾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툰 1,608편(83,347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피고 B, C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326호)을 선고하였다. 피고 B, C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A이 위 판결에 상소하였으나 몰수 및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기각(부산지방법원 2018노3082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1555호)되어 2019.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F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 2021-04-01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각 해당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1차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과 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피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일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파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위 피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B, C은 원고들의 웹툰에 대하여 이미 F 주식회사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웹툰 저작자인 원고들에게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없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0호증,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에 대하여 원고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는 이용자의 웹툰 서비스 이



: 2021-04-01

용으로 발생하는 등의 매출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 가운데 각 해당 웹툰에 대하여 웹툰 사업자와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모두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한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웹툰 사업자의 매출이 감소되는 결과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위 피고들이 드는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 C은 실제로 'D' 웹사이트가 운영되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유의미한 이용료 감소분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어야 비로소 원고들의 손해 발생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고들의 'D' 웹사이트 운영기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원고들 웹툰의 수, 피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광고수익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웹툰 무단복제와 공중송신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서 상당한 매출 감소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손해액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원고들 저작물에 대한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에서 본 피고들의 'D' 웹사이트 운영기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원고들 웹툰의 수, 피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광고수익금의 규모, 이 사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웹툰 저작권자인 소외 M과 피고 A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4447호 사건, M과 피고 B,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5472 사건에서 이루어진 각 판결의 인용 금액, 일부 웹툰들에 대한 웹툰 사업자인 소외 F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64239(2019가합507327)호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금액과 그 내용 등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금으로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인 경우는 150만 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B, C은 웹툰 작가들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각 해당 웹툰에 대한 웹툰 사업자의 손해배상채권이 불가분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에 대하여 원고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이용자의 웹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등의 매출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웹툰 사업자의 매출이 감소되는 결과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웹툰 사업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



: 2021-04-01

상채권이 불가분채권의 관계에 있다거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부진정연대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해당란 각 원고에게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9. 20.부터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판사 이태웅



: 2021-04-01

별지 1

원고 목록

1. N
2. O
3. P
4.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X
12. Y
13. Z
14. AA
15. AB
16. AC
17. AD
18. AE
19. AF
20. AG
21. AH
22. AI
23. AJ



: 2021-04-01

24. AK

25. AL

26. AM

27. AN

28. AO

29. AP

30. AQ

31. AR

32. AS

33. AT

34. AU

35. AV

36. AW

37. AX

38. AY

39. AZ

40. BA

41. BB

42. BC

43. BD

44. BE

45. BF

46. BG

47. BH

48. BI

49. BJ



: 2021-04-01

50. BK



: 2021-04-01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성명	인용금액 (만원)	성명	인용금액 (만원)
	150		300
	600		150
	150		300
	300		150
	300		300
	300		300
	150		300
	300		300
	150		300
	150		300
	300		150
	300		300
	150		150
	150		600
	150		150
	150		300
	300		300
	150		150
	300		300
	300		150
	300		150
	300		150